

서면질문답변서

소 속	평 창 군 의 회	질문의원	김영해의원
질문대상자	평창군수(환경복지과장)	답변일자	2003년 11월 12일

【질문요지】

- 대화쓰레기매립장 관련하여 주민과의 약속사항(서면, 구두등 총괄)

【답변요지】

- 대화위생매립장운영관련하여 평창군과 대화면위생쓰레기매립장협약관리위원회는 2000. 7. 24일 대화위생매립장운영및관리협약을 맺고 협약서의 "지역 개발사업비 및 발전기금" 제1조제1항내지제3항에 의거 년도별 10억원씩 총 30억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하였으며, 이에 대하여는 2002년도 전액 지원 하였음(협약서 붙임)
- 아울러 2003년도에는 "평창군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 조례"를 개정하여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연간 반입된 폐기물 총량을 처리비용으로 환산한 금액의 10%(약4~5천만원)를 2004년 부터 지원하기로 하였음.
- 기타 지역의 현안사업은 이미 당초예산에 편성하여 추진되고 있으며, 일부 사업에 대하여는 해당 부서별로 사업성과 경제성 및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주민 및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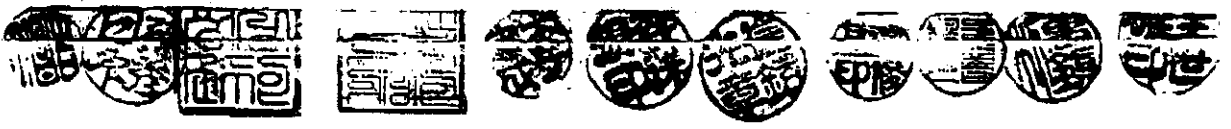
[제 33호 서식]

등부 2000 년 제 2727 호

인 중 서

공중인가
법무법인 **치악종합법률사무소**

공중실:(0371)742-3120, 746-3636
F A X : (0371)745-8868



대화위생매립장
운영 및 관리 협약서

2000. 7. 14.

평 창 군

대화면위생쓰레기매립장협약관리위원회

협약서

본 협약은 대화면 대화리 734번지 일원에 소재한 대화위생쓰레기매립장을 평창군 8읍·면이 공동사용함을 전제로 사용기간과 피해방지 및 지원 등에 관해 평창군(이하"갑"이라 한다)과 대화위생쓰레기매립장협약관리위원회 (이하"을"이라 한다)가 합의한 사항을 기술하여 협약당사자가 연명날인하고, 평창군의회와 협약관리위원이 입회하여 확인하고 공증하여 이행의 증거로 보존한다.

<매립장의 사용기간>

1. 대화위생매립장의사용기간은 200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
- 1) 매립장은 증설 또는 대화면 관내에 변경할 수 없으며, 조기 포화시는 기간 내라도 매립종료조치를 취하여야 하고, 기간내 미포화시에도 매립종료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- 2) "갑"은 위 기간준수와 1)항의 조기포화에 대비한 차기매립장건설을 위해 2000. 12. 31.까지 차기매립장 부지를 선정하고 확정하여야 한다.
- 3) 2)항의 추진사항은 "갑"이 수시 "을"에게 통보해야 하며 2)항의 기간 내 부지 미확정시 "갑"은 조건없이 쓰레기 반입을 금지한다.
- 4) 위3)항의 반입금지 후 재반입여부는 "을"이 제시한 조건을 "갑"이 수용하고, "을"이 승낙하였을 때만 가능하다.
- 5) 차기매립장은 2001년도부터 "갑"이 착공하여야 하며 2004년까지 완공하도록 하여야한다. 또한 공사진도는 "을"이 수시 점검할 수 있도록 한다.
- 6) 차기매립장 건설진척도가 부진할 때는 "을"이 쓰레기 반입을 금지시킬 수 있다.



<지역개발사업비 및 관련 사업비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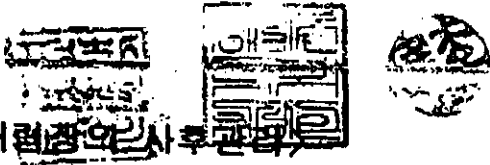
1. 평창군 폐기물 처리시설 촉진 및 주변영향지역 지원조례에 의거 지역개발사업비를 지원한다.

- 1) “갑”은 총 30억원의 사업비를 2000년 10억원, 2001년 10억원, 2002년 10억원을 지원하기로 한다. 단, 의회의 동의를 얻지 못한 지원사업비에 대해서는 추후 의회의 동의를 얻어 지원하도록 하되 의회의 동의를 얻지 못한 군수가 책임을 진다.
- 2) 지원사업은 “을”이 자체적으로 결정배분하고 배분기준은 관리위원회규약 4조에 의하고 사업추진과 사업비의 집행은 대화면이 한다
- 3) 지원사업비는 매년 대화면에 지원되는 일상지원사업과는 별개로 지원한다.

<쓰레기의 반입>

1. 반입쓰레기는 평창군 8개 읍·면 및 지정사업체의 생활폐기물에 한한다.

- 1) 쓰레기는 분리수거 된 것에 한하여 반입이 허용되고, 미분리 수거 쓰레기는 반입을 금지한다.
- 2) 동물사체등 혐오성 폐기물과 지정 및 건축폐기물을 반입을 금지한다.
- 3) 반입차량은 완전 복개하고 적재함에서 물이 떨어져서는 안되며, 악취를 최소화해야 하고 외관이 청결하여야 하며, 미준수시 반입을 금지한다.
- 4) 반입차량은 매일 하절기 오전7시와 동절기에는 오전8시까지 1차반입하고, 오후에는 하절기는 20-22시, 동절기는 18-20시에 반입하여야 한다.
- 5) 반입차량은 되돌아갈 때 세차와 세륜을 실시하여야 하며, 하절기에는 매일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.
- 6) 쓰레기 반입 진입로는 대화 하안미1리(반정교)~대화8리 번구동으로 진입하고 회차는 대화10리로 한다.
대화10리 마을은 동절기와 하절기를 불구하고 진입을 금지한다.



〈매립장의 사후관리〉

1. 매립장의 사후관리는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하며, 부지는 대화면에 제공한다.
- 1) 매립장의 매립종료후에 표면은 30cm복토후 차수막을 설치하고, 차수막 위로 60cm이상 복토를 하여야 한다.
- 2) 침출수는 매립종료 후 15년 동안 계속 관리하여야 하며, 방류수~~에~~에 적합하여야 한다.
- 3) 분출가스는 매립종료 후 안전하다고 인정할 때까지 관리한다.
- 4) 매립장 사용 종료 후 부지는 대화면 주민의 여가선용 공간으로 활용한다.
- 5) 여가선용공간 조성 방법은 "을"이 요구하는 사업을 "갑"의 책임하에 부담하여 설계시공한다.

〈인력, 시설, 장비 운영〉

1. 매립장의 위생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, 시설, 장비를 배치하여야 한다.
- 1) 피해예방과 응급조치를 위해 최소 관리인력이 상주 관리한다.
- 2) 매립장의 위생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장비를 확보하고, 현장에 둔다.
- 3) 기존 소각시설을 운영하지 않고, 신규 소각시설은 설치하지 않는다.

〈주민협의체 운영〉

1. 주민협의체에 필요한 경비는 갑이 지원한다.
- 1) "갑"은 "을"에게 위원회 운영에 따른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되 협의에 의한다.





<협약사항>


1. 본 협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"갑"과 "을"간의 협의에 의해 결정한다.
2. 평창군의회와 협약당사자인 "갑"과 "을"간의 관계 :
 평창군의회는 군민의 대표로서 "갑"과 "을"간의 협약사항을 확인하고 지역개발사업비 지원에 동의하되, 기타 운영관리상 제반사항은 "갑"이 책임진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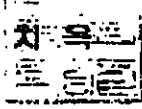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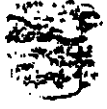
2000년 7월 14일




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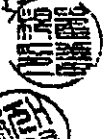

<협약당사자>

(갑) 평 창 군 수 권 력 

(을) 대화위생매립장관리위원회 위원장 이 재 

<입회확인자>

평창군의회 의장 이 차  평창군의회 의원 이 수 현 

관리위원회부위원장 정 창 길 	부위원장 손 수 일 	
위원 리장협의회회장 박 만 진 	체육회장 박 기 래 	
상가번영회장 최 현 	대화 2리장 함 용 	
대화 5리장 변 준 	대화 8리장 최 선 근 	
대화10리장 전 세 	하안미1리장 곽 재 